

建議書 3

일 자 : 2001. 2. 26.

수 신 : 강릉대학교(20개교)

제 목 : 국립대학도서관 직제에 관한 건의서 제출

國立大學圖書館 職制에 關한 建議書

정부조직법과 국립학교설치령이 개정되면서 대학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진통을 겪는 등 대학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동 설치령에 의거하여 대학 내의 조직개편이 각 대학의 총장님께 위임되었기에 학술연구에 핵심 지원시설인 도서관운영의 책임자로써 대학의 장래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바 있어 회원대학의 관장들이 모여 협의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건의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의 구조개편은 대학의 균형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중요한 시점임을 고려하시어 학술정보를 지원하는 중추적 기구인 도서관의 조직을 이용자수, 장서량, 직원수 등 그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대학도서관은 급성장 하는 정보기술에 의한 Web정보를 포함하여 Online DB까지를 망라한해야 하는 등 도서관자료 팽창과 대학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지역사회 봉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학도서관의 업무 확장은 대학의 상징으로서, 각종 대학평가의 중요 요소로서 도서관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학도서관은 대학발전의 필수 조건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도서관의 발전은 총장님의 의지에 좌우됨을 감안하시어 대학도서관 조직이 개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 지역센터 대학인 9개 거점대학도서관(강원, 경북, 경상, 부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의 직제는 현행 3개과 유지,
- ◎ 그 외의 지방10개 대학(강릉, 공주, 군산, 목포, 부경, 순천, 안동, 창원, 한국교원, 한국해양)에는 최소한 2개 과가 설치되어야 하며
- ◎ 거점 대학도서관의 3개과 중 2개과의 과장을 전문사서직(사서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그 외 대학의 2개과 중 1개과 과장을 전문사서직(사서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임 하시어 도서관 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설치령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 법령 또는 규정(예 : 학칙 등)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2월 26일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